

울 산 지 방 법 원

제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3나6513 대여금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B(개명전 : B')
제 1 심 판 결	울산지방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가단14394 판결
변 론 종 결	2014. 3. 12.
판 결 선 고	2014. 3. 26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

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와 C은 2002. 12. 18. 원고로부터 30,000,000원(이하 '이 사건 차용금'이라 한다)을 변제기 '차용일로부터 5개월', 이자 월 3%로 하되 2,000,000원은 선불로 지급하고, 2,500,000원은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.

나.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2056호로 파산선고를, 2006하면2087호로 면책을 신청하여, 위 법원으로부터 2006. 7. 7. 파산선고를, 2006. 8. 25. 면책결정(이하 '이 사건 면책결정'이라 한다)을 각 받았고,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, 피고는,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고,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(갑 제1호증)을 작성하여 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,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

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4. 결 론

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문춘언
	판사	민희진
	판사	장혜정